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21. 12. 28.(화) / 총 5매(본문4 참고1)		
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	담당자 ·과장 김동현, 팀장 양찬윤, 사무관 김민정, 주무관 최상욱 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, 4755			
보도일시 2021년 12월 2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9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		

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허가를 통한 서비스 혁신 본격화

-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위원회, 3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의결 -

-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*에서 3개 사업자(코엑터스, 레인포컴퍼니, 파파모빌리티)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(12월 28일)하였다고 밝혔다.
 - * 위원장 : 국토교통부장관, 위원 :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8인 등
-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(20.4.7)되어 운송플랫폼사업*이 신설된 바 있다.
 - * 플랫폼운송사업(Type1), 플랫폼가맹사업(Type2), 플랫폼중개사업(Type3)으로 분류
-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,
 -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,

- 플랫폼을 통한 호출·예약 방식으로만 운영(배회영업 불가)하면서 사업구역,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·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.

- 또한,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'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*(이하 '기여금')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.

*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%, 대당 月 40만원,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 →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

- 본격적인 법 시행('21.4) 전에도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,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(규제샌드박스, 과기정통부)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,

- 이에 따라 '20.7월부터 3개 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·운영하여 왔다.

* 코엑터스, 파파모빌리티 : '20.5월 규제특례 부여(각 100대, 300대)
레인포컴퍼니 : '21.2월 규제특례 부여(100대)

-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회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,

-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,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.

-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, 새로운 운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,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,

- 지역별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, 택시운영 현황,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(전문직, 장애인, 어린이 등)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심의·의결하였다.

□ 이번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① **코엑터스**(고요한 모빌리티)의 경우, **교통약자**(휠체어·유모차 이용자, 부축이 필요한 승객)와 **언어장애인** 등을 대상으로 **특화 서비스**를 제공하며, **청각 장애인 고용**을 통한 **사회적 가치 실현**이 특징이다.

- 르노삼성(QM6) 차량 외에도 **영국 블랙캡 택시** 차량(LEVC TX5)도 활용할 계획으로, **휠체어·유모차** 이용 승객들의 **편의 도모**에 중점을 두었으며,
- 코엑터스는 **장애인표준사업장**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**부담금 감면**(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%까지) **혜택**을 누릴 수 있다.

② **레인포컴퍼니**는 **월 구독형 요금제**를 기반으로, **법인 업무용 차량**을 대체하는 **고급형 기업 간 거래**(B2B, Business to Business)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, **대형로펌, 기업** 등과 계약, **전문직 임직원**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, **임원 수행 차량·기사, 의전 차량** 등을 **월 단위 구독상품**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.
- 차종 측면에서도 **제네시스(G80·90), 벤츠(EQC), 카니발 하이리무진** 등을 활용, 기존 **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**을 가질 예정이다.

③ **파파 모빌리티**는 **에스코트**(이동약자 동행), **키즈**(어린이 고객)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, **카니발, 스타리아** 등 차량을 활용해 **휠체어 탑승, 어린이 카시트 제공**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.

- **임산부, 노약자, 어린이**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**문 앞까지 이동**을 지원하는 **맞춤형 서비스**를 지향한다.

□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**서비스 차별화 계획**과 지역별 **운송 수요·공급 현황**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,

○ **코엑터스 100대**(서울, 광명, 부천, 인천지역), **레인포컴퍼니 220대**(서울, 성남지역), **파파모빌리티 100대**(서울, 인천지역)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였다.

○ 다만, 이후 **사업운영** 과정에서 필요 시, 사업자는 **여객자동차법령**에 따른 **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** 등 **필요 절차**를 거친 후 **사업계획의 변경**이 가능하다.

□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**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**은 “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**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**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**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”한다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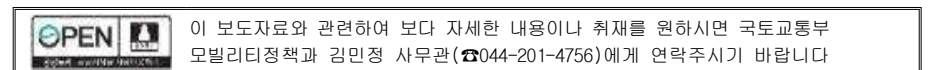
○ “특히, **이동약자 서비스**를 통하여,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**휠체어 탑승자,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,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** 등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,

- **기업 간 거래(B2B, Business to Business) 운송모델** 도입을 통해서 **법인의 전속 차량 기사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대체**하는 등 **전체 운송시장 규모를 확대**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**전체 운송시장의 상황**을 면밀하게 **모니터링**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**지속 반영**할 예정이며,

○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**여객자동차법령** 등 관계 법령을 **준수**하면서 **적법하게 운송서비스**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관리 감독**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또한, 전반적인 **운송시장 안정**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**납부한 기여금**을 **택시 감차사업에 활용**하고, **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**을 위해서도 **투입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

① 코엑터스(고요한 모빌리티)



< 운수종사자 단체사진 >



< 운수종사자(청각장애인 등)와 승객 간 의사소통을 돕는 테블릿 >

② 레인포컴퍼니



< 법인 임원 탑승 관련 이미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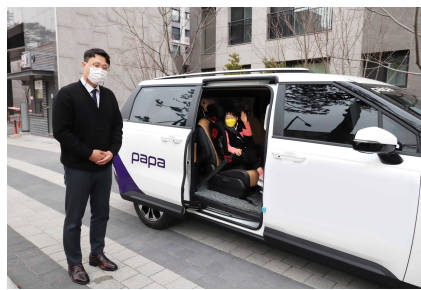


< 의전제공 관련 이미지 >

③ 파파모빌리티



< 휠체어 탑승 승객 지원 이미지 >



< 어린이 탑승 이미지 >